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조 영 철

농촌진흥청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Extension System

Yeong Cheol Cho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in Japan, and 2)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Faced with various problems since its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in 1997,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needs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continually achieve the national goals of food producti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o meet increasing needs of farmer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Japan as follows; 1) Each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were administratively and technically coordinated by the prefectural (provincial) government, 2) There were 11 public corporations with agricultural extension functions under the MAFF(Ministry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financed by government subsidies 3)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s at provincial level wer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gricultural innovations for farmers' adoption, 4) The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were independent from the loc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ome of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order to accomplish major objective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legal status of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should be changed from city/county to provincial government, 2)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public corporations concerned with agricultural extension under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hould be reinforced in terms of applied farming research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y, 4)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should be independent from administrative function and be separated from administration at the city/county level.

Key Words :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Japan,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 서 론

우리 나라의 인접국이며 선진농업국인 일본은 1893년부터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일본 역시 서구로부터 지도사업이 도입되었기 때

문에 미국의 협동농촌지도사업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지방화가 잘 발달하여 농촌지도사업 역시 지방화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와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농촌지도체계를 살펴보는 것

은 이제 지방화의 첫 단계를 거치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나라 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I. 일본 농촌지도사업 추진현황

일본의 지도체계는 우리와는 달리 도(都·道·府·縣)단위 광역체계이다. 우리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농업개량보급센터는 우리처럼 시군(市·町·村)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도단위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는 485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볼 때 7개 시정촌에 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47개 도도부현, 3,381개의 시정촌(672市, 1,990町, 568村, 151行政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도부현에는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원과 같이 연구와 지도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구는 없으나 시험연구기관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도도부현의 과(농업기술과, 농정기획과, 농업경영과 등)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시험연구기관은 19개의 국가 시험연구기관을 제외하고도 전국의 도도부현에 총 273개의 시험연구기관이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지도인력은 전문기술원은 638명, 개량보급원 9,605명으로 모두 10,243명이 있다. 이중 생활개량보급원은 1,391명(전문기술원 95, 개량보급원 1,296명)으로 전체 지도인력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기술원의 임무는 시험연구기관, 시정촌, 농업에 관한 단체, 교육기관 등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전문사항 또는 보급지도활동의 기술 및 방법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며 개량보급원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도부현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비는 교부금에 의하여 지원하며, 국비의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도부

현에서 부담하고 있다.

중앙의 농림수산성에는 보급교육과 (금년 1월 6일 보급과로 바뀜)에서 농업개량조장법에 의거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교육과 소속 지도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법인이 11개나 운영되고 있다. (예, 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 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농민교육협회 등)

III.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설치 운영

일본 전체로 볼 때 농업개량보급센터는 줄어 들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6~7개 시정촌당 1개소의 센터 설치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의 지사가 센터의 통합을 희망할 경우 농림수산성에서 제재를 가할 법적인 장치는 없다.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설치는 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6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도도부현 단위의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및 통합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바라키(茨城) 현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개량보급센터는 1992년 농업관련 "연구, 지도, 교육"을 한 곳에 묶어 <그림 1>과 같이 "농업종합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를 두고 있는데, 통합전에는 26개소이던 센터가 통합후에는 12개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연구, 보급, 교육이 한 기관으로 통합한 것은 현지사와 대학의 구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이바라키 대학의 교수가 위원장인 "이바라키현 농업관계 시험연구, 교육 등 정비구상 검토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 위원회는 약 10개월간 운영되었다.

이때 센터의 설치기준은 ① 현 보급소의 관할 구역을 없애고, ② 활동범위가 자동차로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③ 군 지역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합전에는 3~4개 시정촌당 1개의 보급소가 있었으나 통합후에는 6~8개 시정촌당 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전에는 26개 보급소에 68개과 (3과 16개소, 2과 10개소) 이었으나 통합후에는 센터당 4과를 기

준으로 하고 10개지역에는 4과(지역보급, 농축산, 경영생활, 원예)를 2개지역에는 3과(지역보급, 농촌생활, 원예)를 두어 총 46개과로 22개의 과가 줄어들었다. 보급직원은 통합전 354명이었으나 통합후에는 330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시 보직을 받지 못하였던 소장에 대하여는 센터장 밑에 技佐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자연 소멸될 때까지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은 살펴보면 도도부현에 소속하여 보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의 위치, 명칭,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농업개량조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바라끼현의 “행정조직조례”를 살펴본 결과 명칭, 관할구역, 센터의 임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으며, 그 임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 6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1. 도도부현은 지역농업개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사항의 사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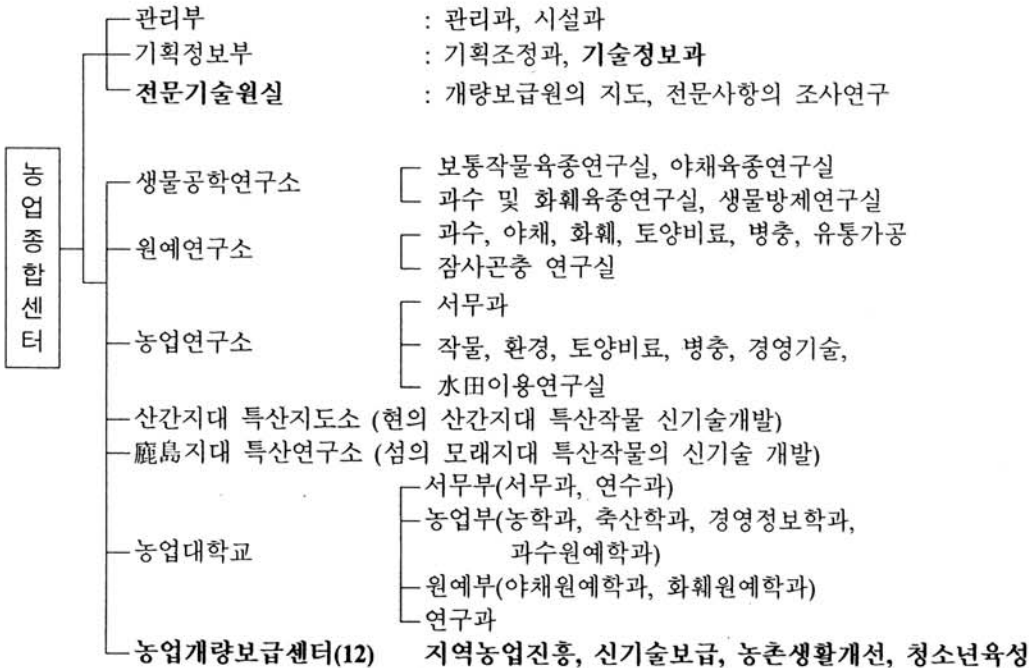
- ① 그 소속 개량보급원이 하는 제14조의 2, 제5항의 사무의 연락 조정, 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의 보급지도를 총괄하기 위한 활동
- ② 농업자에 대하여 농업경영 또는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정보제공
- ③ 신규 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 상담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제14조 제1항 제5호의 연수교육은 제외)

3. 센터의 위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한다.

4. 센터장은 개량보급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

〈이바라끼현의 조례에 나타난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업무〉

1. 농업기술의 보급 지도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영개선의 보급지도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 생활개선의 보급지도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신규 취농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농촌청년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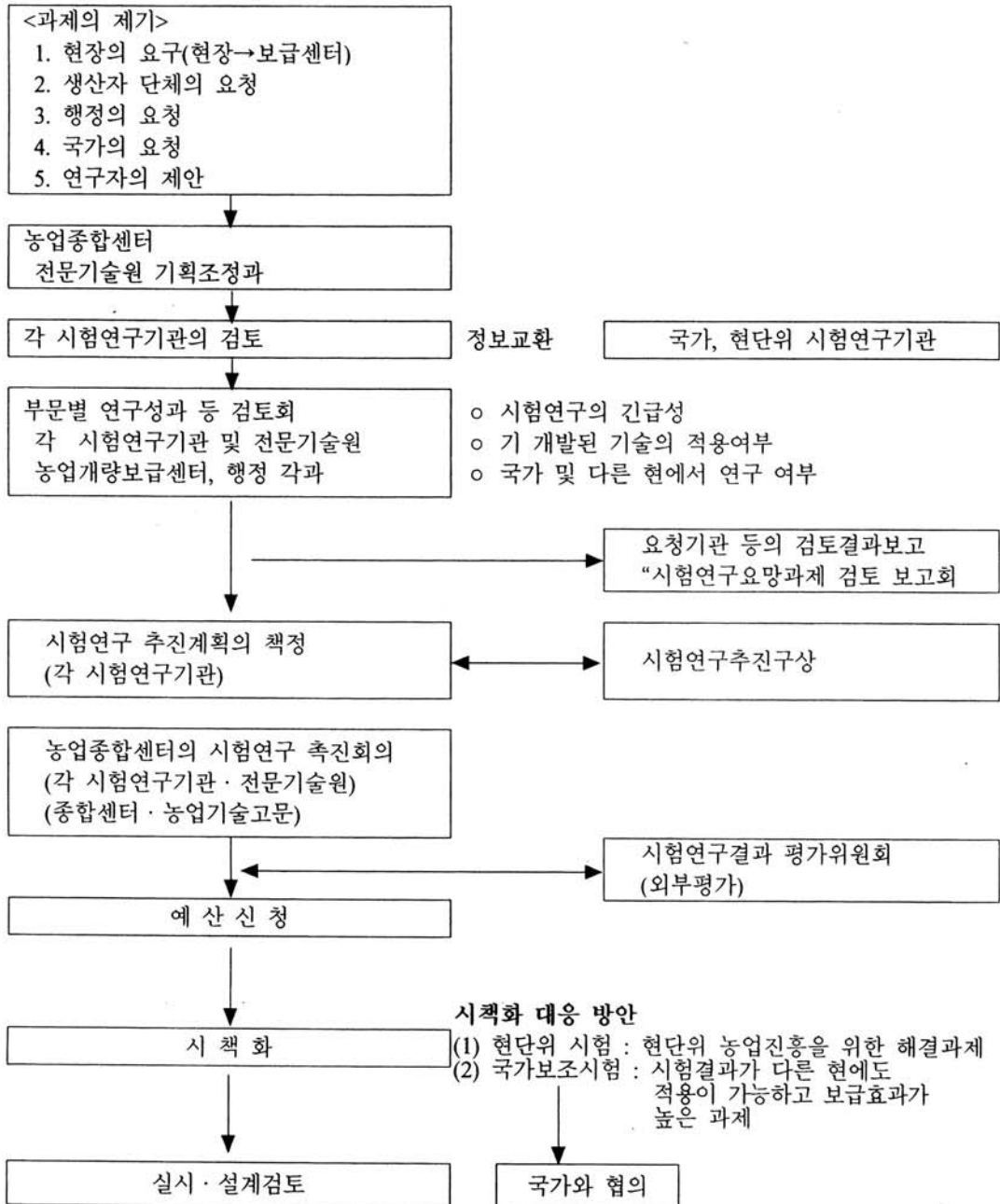
〈그림 1〉 이바라끼현의 농업종합센터 조직표

IV. 시험 연구결과의 보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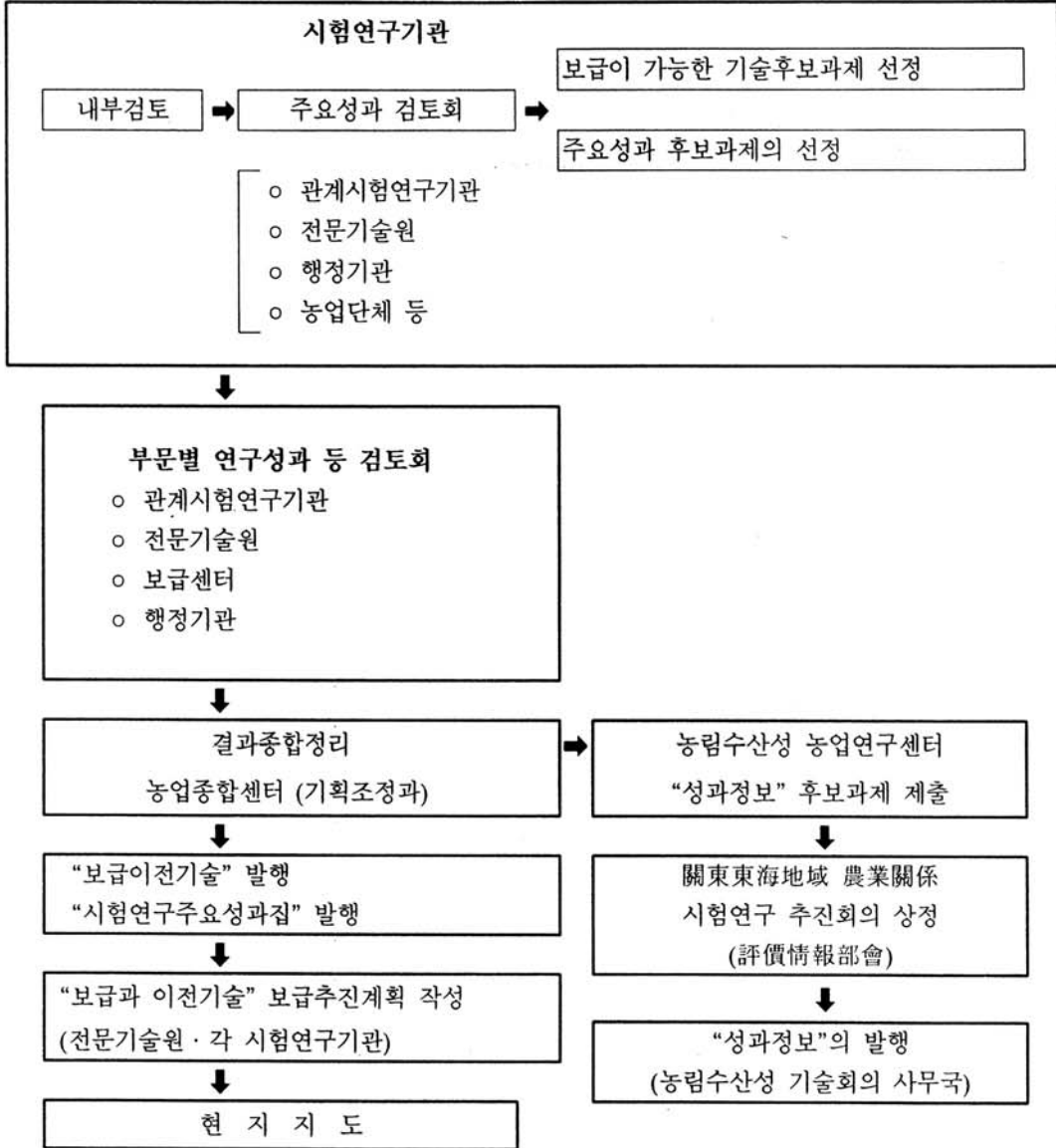
중앙의 시험 연구기관은 첨단기술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보급할 새로운

품종 및 기술사항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바라키 현의 경우 시험 연구과제의 선정 절차는 <표 1> 과 같다.

<표 1> 시험연구과제 선정절차



<표 2> 시험 연구결과의 보급절차



또한 시험연구결과의 보급 절차는 <표 2>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이 잘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V. 사업계획 및 평가

일본의 농촌지도사업은 국가와 도도부현 협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명칭과 유사한 “협동농업보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48년 제정된 법률인 “농업개량조장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률은 1994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성에서는 매 5년마다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14조 제2항) 최근에는 2000. 3. 2, 농림수산성

고시 제328호로 시달한 바 있다. (붙임자료 참고)

이 지침에 의거 도도부현의 농업개량보급사업을 담당하는 과(농정기획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농업경영과 등)에서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동법률 제14조 제5, 6항)하고 있다. 이 방침은 5년 동안에 이루어야 할 보급사업의 대강을 정한 것으로 이 방침에 의거 각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 5년간의 “보급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 5년간의 계획에 의거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월간계획까지 상세히 수립되어 있다. 현재 각 센터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농업개량보급센터연보”를 발간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1997년 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후 나타난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화가 잘 발달된 일본의 농촌지도사업의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모든 농업인에게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도 단위로 광역체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화로 인하여 전국에 센터가 없는 13개 시군에 대하여는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센터가 없는 시군의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기관의 결과가 오직 센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품종과 기술이 전달될 수 없는 체계상의 모순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광역화 이후 센터의 통합이 계속

이루어 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화가 완전히 정착한 일본의 경우 센터수가 아직도 485개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센터 설치기준이 차량으로 1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중앙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활동이 지도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는 1개의 과박에는 없으나, 보급교육과에서 관장하는 공익법인체가 11개나 있으며 각각 2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보조금과 회비, 자체수입으로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중앙의 기능을 비교할 때 1개의 과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 제한되어 보이나, 보급교육과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예로 1964년에 설립된 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는 전국지도정보망(EI-net)의 운영과 조사연구, 인쇄물 발간, 지도공무원 연수, 해외기술협력사업, 연찬회 강연회 개최를 주관하고 있으며 정규직원도 26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역시 14명의 직원이 있으며 청소년 교육 및 취농 등을 위해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농업인에게 새로운 품종과 혁신사항을 개발하는 시험연구가 도도부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은 첨단연구 등 국가의 필요에 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도부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우리의 중앙시험연구기관에서나 이루어지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연구는 농업인을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시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도 도 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개량보급센터는 농정기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연구, 지도, 교육기관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어도 겉으로 보아서는 완전한 통합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도기능을 독자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센터단위별로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바라끼(茨城)현의 경우 연구, 지도, 교육을 통합하여 농업종합센터라는 거대한 기구를 만들었으나 그 기능은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부, 기획정보부, 전문기술원실을 종합센터의 직속으로 운영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일부 시군의 경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완전히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곳은 지도공무원이 농촌지도보다는 감사에 대비한 예산집행을 주로 하는 농업행정에서 시간을 보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우리도 하루 빨리 통합된 곳은 기능적으로라도 농정과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VII. 참 고 문 헌

1. 농업보급제도연구회편, 1996, 개정농업개량조장법의 해설, 사단법인 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 東京
2. 일본농업보급학회, 1995~2000, 농업보급연구 1호~10호, 東京
3. 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 2000, 2000 전국농업개량보급센터 보급직원 명부
4. 이바라끼(茨城)현, 1998. 10, 농업기술보급 50년사
5. 농림수산성, 2000. 3,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방침
6. 농림수산성, 2000, 협동농업보급사업 실시방침 및 가이드라인
7. 이바라끼(茨城)현, 2000. 9, 협동농업보급사업 실시방침
8. 사이다마(埼玉)현, 2000, 9, 협동농업보급사업 실시방침
9. 일본의 통계, 2000, 총무청 통계국, 대장성인쇄국

(2001년 5월 11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

〈붙임자료〉

협동농업보급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농림수산성 고시 제328호, 2000. 3. 3)

협동농업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은 1948년 발족한 이래 일반행정과 시험연구를 병행한 가장 기본적인 농정추진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과 농촌생활개선에 자주적으로 노력하여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일본 농업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식료,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정세는 식량자급률 저하와 농업인의 감소·고령화 등 최근에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7일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후 보급사업 전개에 맞게 하려면, 농업 및 농촌 환경변화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기초로 신농정 추진의 기본으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급사업 추진의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협동농업보급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1. 보급지도활동의 기본적인 과제

보급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기본적인 과제로 한다.

(1) 경영감각이 우수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경영감각이 우수한 농업인 육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認定농업자를 시작하는 경영개선에 의욕적인 농업인 조직경영체, 의욕있는 신규취농자, 경영참여를 계획하는 여성농업인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미래를 향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을 상세히 지원하는데 있다.

(2) 농업인 스스로의 지역 중점과제 육성에 대한 지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과제에 관해서, 이것을 지역농업인 등이 자신들의 과제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관점으로써,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인재가 지역계획 참여와 농업인 합의 형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과제해결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점육성과제는 水田農業經營의 확립, 농업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중산간지대의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실현, 농산어촌 남녀 공동참여사회의 형성,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생활·영농환경 개선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설정한다.

2.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의 배치에 관한 기본 지침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에 관해서는 보급사업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과제 및 농업인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도도부현의 농업상황과 지역 특성 등을 배려해서 적절한 배치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문기술원에 관해서는 개량보급원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활동체제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개량보급원의 재임기간에 관해서는 대상자와 밀착한 계속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동일 근무지역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기본 사항

최근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술혁신 및 농업인의 요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능력 및 경영지도능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과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 연수의 충실 강화를 노력한다.

특히, 개량보급원의 경험년수가 적은 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도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고도의 지식·기술과 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연구기관, 농업관계부처 등과의 계획적인 인사교류의 추진을 노력한다.

4. 보급지도활동의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보급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1) 농업인의 요구에 대응한 고도 기술의 신속한 보급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급조직과 시험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의 촉진,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이하 보급센터)의 현장해결형의 실증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촉진 등을 노력한다.

(2) 개별농업인의 경험전반에 대한 지원의 추진

농업인에 의한 「생산자」로부터 「경영자」로의 의식을 전환하고, 자주적인 경영의 전개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술지도로 끝나지 않도록 개별 농업인의 경영의 발전의 정도에 대응한 기술의 소개와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지원하는 등 개별 농업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급사업의 추진을 노력한다.

한편, 시정촌 경영개선 지원센터를 지역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거점의 하나로서 활용하고,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협 등 지역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노력한다.

(3) 농협 등과의 역할 분담과 민간전문가의 활용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자의 중점화 등과 함께 일반적인 영농지도와 유통분야의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농협 등과의 관계에 관해서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 소속한 영농지도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한편, 경영의 다각화와 법인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특히 가공 및 판매부분에 관한 보급협력위원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세무·노무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이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면서 농업인 등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다.

(4) 효율적·효과적인 보급활동체계의 정비

보급센터의 명칭에 관해서는 개량보급원이 보급활동을 전개하는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종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입장에서 기능을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급센터의 배치에 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보급센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농업인과의 정보네트워크, 보급센터내의 정보관리체제와 함께 보급협력위원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정보제공체제 및 상담체제의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그 위에 보다 명확한 보급사업 실시를 위해서 폭넓은 관점에서부터 보급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얻은 평가 결과를 보급사업의 실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 농업연수교육의 충실강화와 농업에 관한 교육의 구성

보급센터가 청년농업인 양성과 신규취농의 지원에 관해서 농업인 연수교육시설과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 농업인에 의한 자주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새롭게 취농하는 자에 대한 취농상담활동 등의 실시에 노력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선진 경영을 실천하는 지도농업사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얻도록 한다.

농업인 연수교육시설에 관해서는 실습과 강의 등을 종합하여 실천적인 연수교육을 통해서 장래의 농업·농촌을 담당할 인재 양성 및 농업인에 대한 경영발전에 따른 연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교육의 거점시설이 되도록 하고, 양성부문을 추가하여 연구부문과 연수부문의 병설, 농림수산부 농업자대학교 및 농업고등학교 등과의 연계, 각 기능의 보다 충실강화에 노력한다.

보급센터 및 농업인 연수교육시설에 관해서는 국민전체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미래의 농업 담당자의 확보를 노력하고 농고생의 실천적인 농업연수와 초·중학생의 농업체험학습의 지원 등에 관해서 교육기관, 시정촌 및 관계단체와의 연계하여 농업에 관한 교육 추진 노력을 한다.

5. 기타 협동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1) 각종 행정시책의 적극적 활용

보급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자금, 보조사업 등 각종 행정시책의 활용 촉진을 노력한다.

(2) 관계기관 등과의 밀접한 연계의 확보

보급사업과 각종 행정시책과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등에 의해 구성된 지역농업개량보급추진협의회 등의 활성화 및 그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임업보급지도사업과 수산개량보급사업과의 밀접한 연계 확보에 유의한다.